

1. 제정이유

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병원의 필요적 진료대상은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경찰공무원 및 소방·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·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,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,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, 그 면제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
나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, 소방·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,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, 소방·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,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고,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, 할인율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, 그 할인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다. 소방병원의 진료비 면제 및 할인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할 때, 입원 수용능력이 부족할 때,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가액 또는 치료 재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- 라. 소방병원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」 등 법령에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, 그 외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마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·연구기관·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소방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,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바. 원장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그 조치결과를 소속 대학·연구기관·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7조)
- 사.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,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표와 추정손익계산서,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(안 제8조)
- 아. 소방병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9조)
- 자.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,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도록 함(안 제10조)
- 카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국유재산 무상대부는 국유대상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(안 제11조)

- 차. 법 제16조제2항*에서 위임한 소방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“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,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”으로 규정함(안 제12조)
- 타. 법 제1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매 사업연도 수입·지출의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,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, 감사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및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(안 제13조)
- 파.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·운영 수탁기관 선정 시 병원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과 재정적 부담능력, 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(안 제14조)
- 하.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·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,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(안 제15조)
- 거.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·운영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, 위탁사무 및 내용, 위탁기간, 수탁기관의 의무,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(안 제16조)
- 너.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, 병원운영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(안 제17조)
- 더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소방병원의 수

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고, 소방병원의 경영상태(책임경영, 재정자립, 병원관리)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(사회기여 및 진료환경)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, 소방청장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, 기준,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18조)

러. 소방병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,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

며. 법 제27조제2항에서 따라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함(안 제20조 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료대상 등) ① 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립소방병원(이하 “소방병원”이라 한다)의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
2.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
3. 「소방공무원법」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
4. 「경찰공무원법」에 따른 경찰공무원
5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
6.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, 그 면제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사람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용소방대원
2.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
3.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직 근로자
4.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따른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직 근로자
5.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
6. 소방병원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소방병원에 소속된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 할인율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, 그 할인된 비용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진료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진료비 면제 및 할인의 예외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예산이 부족할 때
2. 입원 수용능력이 부족할 때
3.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가액 또는 치료재료를 필요로 할 때
4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적용범위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수가기준) ① 소방병원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」 등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)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·연구기관·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(이하 “겸직자”라 한다.)은 소방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겸직자는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, 소방병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소방병원은 겸직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제7조(겸직해제)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6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해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자의 소속 대학·연구기관·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) 소방병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

첨부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

제9조(출연금의 지급신청) 소방병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잉여금의 처리)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填)에 충당하고,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국유재산의 무상 대부)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른다.

제12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, 방침,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
2.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

제13조(결산서의 제출)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·지출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

2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3.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
제14조(수탁기관 선정기준)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법인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.)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소방병원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
2. 재정적인 부담능력
3. 소방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제15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소방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제1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위탁사무 및 내용
3. 위탁기간
4. 수탁기관의 의무
5. 위탁계약의 해지
6. 계약 위반 시의 책임
7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, 위탁사무명 및 위탁기간 등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운영평가의 실시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)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
2. 운영평가의 지표는 소방병원의 경영상태(책임경영, 재정자립, 병원관리),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, 고객서비스(사회기여 및 진료환경)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

② 소방청장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, 기준,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

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공무원의 파견) ① 소방병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과태료의 부과)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	200만원	350만원	500만원